대구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-1호

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의회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1월 11일

대구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서	직무내용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4명	1년	전문위원실	○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○ 행정사무감사·조사,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자료작성, 참석 등 지원 ○ 그 밖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
입법·정책연구 (교통분야)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2년	정책분석 담당관실	○ 의장 및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과제, 의안의 검토 및 지원 ○ 시(교통국 소관)·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(재정 등)의 분석 및 연구 등 ○ 의정활동 관련 현안 과제의 발굴, 조사 및 지원 등 ○ 지방자치제도 연구, 세미나·연찬회 및 토론회 개최 ○ 그 밖의 입법(법제) 지원 및 의정 자문 등
입법 및 의정자문	가급*35시간 (시간선택제임기제)	1명	1년		○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 검토 ○ 의정활동 관련 법규 해석 및 정책 자문 ○ 의안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○ 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자문 및 해석 ○ 주요 쟁송 대응 등 법률 지원 ○ 그 밖의 의정 자문 등에 관한 사항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

2. 법령근거

○ 지방공무원법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

○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
○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**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)**에 해당되지 않고, **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

【 결 격 사 유 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- 지역·성별·연령 :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(**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**)

○ 임용요건 :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
임용분야 (임용직급)	임 용 자 격 기 준
정책지원관 (지방행정주사보)	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기업 등에서 ▸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및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(기획행정, 문화복지, 건설교통, 경제환경, 교육) 소관 업무 등과 관련 입법 조사·지원,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* 공공기관 :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기획재정부)
입법·정책연구 (교 통 분 야) (지방행정주사보)	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대학교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서 교통* 관련 기획, 정책연구, 정책개발, 입법 실무 등의 근무 경력 * 집행부 교통국 소관 업무

입법 및 의정자문 (가급*35시간, 시간선택제임기제)	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임용분야와 관련된 법, 행정, 지방자치 등 업무수행 경력

※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

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

※ 전임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하며, 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. 보수 수준

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고
지방행정주사보 (7급 상당)	64,776천원	46,006천원	① 연봉 외 급여(각종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 ②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시간선택제 가급 *주35시간 근무시	-	55,783천원	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시험일정

임용분야	응시원서접수	시험구분	서류심사	합격자발표
정책지원관	2023. 1. 26.(목) ~ 1. 30.(월), 3일간	서류전형	2023. 2. 6.(월)	2023. 2. 7.(화)
입법·정책연구 (교통분야)	2023. 1. 30.(월) ~ 2. 1.(수), 3일간		2023. 2. 9.(목)	2023. 2. 10.(금)
입법 및 의정자문				
		면접시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시험방법

< 1차 서류전형 >

–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▶ 서류전형 기준 : 실무경력, 직무수행계획서, 자기소개서 등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실에서 별도 설정 및 시행

–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(https://council.daegu.go.kr)에 공고

< 2차 면접시험 >

–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및 개별발표(일반임기제 7급 상당이상),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

–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
–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
–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(https://council.daegu.go.kr)에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○ 교 부 처 :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(https://council.daegu.go.kr) 시험정보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포함)을 출력하여 사용

○ 접수기간

· 정책지원관 : 2023. 1. 26.(목) ~ 2023. 1. 30.(월)

· 입법·정책연구(교통분야), 입법및의정자문 : 2023. 1. 30.(월) ~ 2023. 2. 1.(수)

※근무시간 내(09:00~18:00), 점심시간(12~13시) 제외

○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실 인사팀(대구광역시의회 1층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우편봉투 겉면에 "(정책지원관), (입법·정책연구), (입법 및 의정자문) 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" 문구 표기
- 주 소 : 우(41911)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실 인사팀

7. 제출서류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서식 제1호) 1부

② 응시원서(별지 서식 제2호) 1부

- 응시수수료 :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'대구광역시수입증지' 구입(수입인지 아님)

※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(가급: 1만원, 7급: 7천원)

③ 이력서(별지 서식 제3호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④ 자기소개서(별지 서식 제4호) 1부

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서식 제5호) 1부
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서식 제6호) 1부

⑦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서식 제7호) 1부

⑧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
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
※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 서식 제8호) 제출

⑨ **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**
(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)

- **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, 연락처 기재**

※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(별지 서식 제9호)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
※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 제출

- **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 제출 시 첨부)**

·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부

· **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** 또는 **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** 1부
(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
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☞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(학력, 경력 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
(※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)

☞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☞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

⑩ **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서식 제10호) 1부**

⑪ **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**

⑫ 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1부(해당자에 한함)**

8. 기타(유의)사항

○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,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**

○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
○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**
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
○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(https://council.daegu.go.kr)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.
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**대구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실 인사팀(☎ 053-803-5113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직무내용 관련 문의

임용분야	담당부서	연락처
입법·정책연구(교통분야)	대구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실 인사팀	053-803-5124
입법 및 의정자문		

〈붙임 1〉

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4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의회	전문위원실

주요업무	·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· 자치법규 자료 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 · 행정사무 감사·조사,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·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·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자료작성, 참석 등 지원 · 그 밖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

필요역량	·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· 회기운영, 의사진행, 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· 조례안, 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작성 능력 ·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분석·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 능력

필요지식	· 지방의회 회기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· 조례안, 건의·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

응시자격요건	**관련분야 : 정책지원관**	
	경력	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**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기업 등에서 ▸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및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(기획행정,문화복지, 건설교통, 경제환경, 교육) 소관 업무 등과 관련 입법 조사·지원,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* 공공기관 :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 (기획재정부)

※ 우대요건: 해당없음

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입법·정책 연구 (교통분야)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의회	정책분석담당관실

주요업무 (교통관련)	○ 의장 및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과제, 의안의 검토 및 지원 ○ 시(교통국 소관).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(재정 등)의 분석과 연구 등 ○ 의정활동 관련 현안 과제의 발굴, 조사 및 지원 등 ○ 지방자치제도 연구, 세미나.연찬회 및 토론회 개최 ○ 그 밖의 입법(법제) 지원 및 의정 자문 등

필요역량	○ **(공통 역량)**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**(직급별 역량)**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・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・조정능력 ○ **(직렬별 역량)**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
필요지식	○ 교통관련 전문 지식과 이해도 ○ 교통관련 법률과 행정 지식 ○ 교통관련 정책(재정) 분석을 통한 입법과 대안 제시 실무 능력 ○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능력

응시자격요건	**관련분야 : 입법 및 정책 연구(교통분야)**	
	경력	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** 국회, 지방의회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대학교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서 교통관련* 기획, 정책연구, 정책개발, 입법 실무 등의 근무 경력 * 대구시 교통국 소관 업무

※ 우대요건: 해당없음

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입법 및 의정 자문	'가'급(시간선택제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의회	정책분석담당관실

주요업무	○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 검토 ○ 의정활동관련 법규 해석 및 정책자문 ○ 의안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○ 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자문 및 해석 ○ 주요 쟁송 대응 등 법률 지원 ○ 그 밖의 의정 자문 등에 관한 사항

필요역량	○ **(공통 역량)**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**(직급별 역량)**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・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・조정능력 ○ **(직렬별 역량)**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
필요지식	○ 법률 전문 지식 ○ 시.의정 전반에 대한 지식

응시자격요건	**관련분야 : 입법 및 의정자문 분야**	
	경력	「변호사법」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 ①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**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임용분야와 관련된 법, 행정, 지방자치 등 업무수행 경력

※ 우대요건: 해당없음